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숭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31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 백승아·박해철·서미화

민병덕 • 박지혜 • 김 윤

한창민 · 오세희 · 용혜인

조계원 · 김성환 · 허 영

정혜경 • 황정아 • 민형배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·초·중등교원은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.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.

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자 교육 주체로서 유·초·중등교원은 대학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후보 요건을 보장받아야 함에도, 현행법 상 유·초·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거 에 입후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임.

이에 유·초·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 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·초·중등교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44조 및 제45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801호)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832호) 및 「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183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대학에"를 "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 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학에"로 한다.

- 13. 「공직선거법」제53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
- 14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 보하려는 경우

제4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제4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휴직사유 및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1항제13호·제14호 및 제45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공무원이 입후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4조(휴직) ① 교육공무원이 다 제44조(휴직) ① -----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 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 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 야 하고, 제7호,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1. ~ 12. (생략) 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「공직선거법」제53조제1항 <신 설> 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려 는 경우 14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<신 설> 률」 제47조제1항에 따라 선 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 ③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 에 따른 유치원, 「초・중등교 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육법ㅣ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 대학에-----다.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

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④·⑤ (생 략)

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휴직기간 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------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11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②·③ (생 략)

	•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- 1. ~ 11. (현행과 같음)
- 12. 제44조제1항제13호 및 제14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 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다.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